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l307@naver.com 담당 : 박용복부장 (H·P) 010-8688-5619

문서번호 시험 2019 - 1호

시행일자 2019. 01. 07.

수 신 국토교통부장관

참 조 시설안전과장

선			지	
결			시	
점	일자		결	
	시간			
수	번호		재·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공단 전담시설물 철회 요청

1. 국가시설물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경의를 표하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1035호(2015.12.28.)의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공용 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계측, 보수·보강설계 및 유지관리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민복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취약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 및 위해 요인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명실상부 비영리법인으로서 안전진단기관을 대변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안전 전문가 단체입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대행하는 시설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에서 세부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였으며 항만시설 중에서 말뚝구조의 계류시설의 경우 10만 톤급 이상의 시설만 공단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 부산항 신선대부두 5번 선석의 경우 불입과 같이 항만관리청인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의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정(2016.12.25.)」 및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50,000톤급(DWT)으로 규정한 시설을 위 국토교통부 고시에 포함으로써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민간 안전진단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의 영역을 침범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되어 우리 협회 입장에서 매우 유

감스럽게 여기며, 이와 같은 처사는 공공분야의 업무를 점차 민간부문으로 이양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 등록된 항만분야 민간 업체 73개사에는 항만분야에서 40년 이상 종사하며 기술사 및 박사학위를 보유한 우수한 건설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고 시설물 안전법 시행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업체의 안전진단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등 해당 시설이 지금까지 민간 업체에서 계속 수행한 결과 진단수행 능력 전반에 걸쳐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기에

5. 부산항 신선대부두 5번 선석에 대한 공단 전담시설을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고, 민간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이 맞다고 판단되어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항만시설의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운영규정 발췌
2.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발췌.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